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27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시·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범위)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 -----. ----- -----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 ----- ----- ----- ----- 「기후위기 대

현행	개정안
<u>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u>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u>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⑦ <u>제5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제6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현행	개정안
으로 <u>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② ~ ⑧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u><신설></u> 2. ~ 11. (생략)	-----<u>에너지위원회를</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의 공개 및 개선의견의 제시에 관한 사항</u> 2. ~ 11. (현행과 같음)

현행 「에너지법」 제7조제1항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1)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에너지계획

1) 국무총리실 소관

2) 환경부 소관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표 2]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법률 개정 연혁

법 률 (제정·개정일)	주요 내용
「에너지기본법」 (2010.1.12.까지)	- 제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녹색성장법」 (2010.1.13. ~2021.9.23.)	-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등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탄소중립기본법」 (2021.9.24.제정)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국가비전(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등 포함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이에 개정안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舊 「녹색성장법」의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달성을

목표로 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목표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함께 이미 폐지된 「녹색성장법」의 에너지기본계획의 달성을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계획에 근거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은 국가비전³⁾과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에너지 관련 법령제·개정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에너지안보 등 에너지정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8